

★ ◎

더불어사는 화살기관리양 성동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337
결재일자	2015.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신경숙	代이범진	代나재진	전결 08/13 박기웅	
협조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수립



성 동 구
【기 획 예 산 과】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수립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기금운용 수익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기본방향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재정공시를 통해 기금성과분석 결과 수시 공개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 '13년도부터 모든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
- 2014년 성과분석 결과 '권고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 점검

《2016년 주요 변경 사항》

- 지방의회 승인없는 변경 범위 축소: 정책사업의 50% → 20%
- 결산서 제출시기 조정: 6월末 → 5. 10.(일반회계와 일치)
- 존속기한: 5년 초과금지(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및 조례 개정)
※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은 2016. 12. 31.로 함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적성: '17회계년도 의무화('16년은 시범)
- 설치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성과분석 명시적 주기 조정: 3년 1회 → 매년
- 민간보조금 중 운영비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만 교부토록 근거 신설(일반회계와 동일)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에서 수행
- 폐지기금 자금 활용 근거 명시: 지방채 상환 등 우선 활용
-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예산과 같이 정보시스템으로 사용 의무화

II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소관 부서	2015년도 말 현재액(천원)
총 13개 기금			합계: 25,579,09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2008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자치행정과	3,030,000
장학기금	2006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장려 및 지역 인재육성	교육지원과	3,687,275
통합관리기금	2012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기획예산과	11,514,411
중소기업육성기금	1991	성동구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역경제과	483,329
여성발전기금	2005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	보육가족과	312,014
자활기금	2007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빈곤층 탈피	사회복지과	1,407,690
노인복지기금	1999	성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청소년과	552,937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의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청소행정과	461,835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1995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 충당	청소행정과	138,444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안전관리과	423,818
도로굴착복구기금	1999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	토목과	993,788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	치수과	2,324,040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보건위생과	249,510

※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상의 금액임

Ⅲ 수립 세부기준

1. 기금운용계획 작성

□ 일반원칙

- 기금운용계획은 이 작성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이 작성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것은 당해 기금 관련 법령 · 조례, 행정자치부 「201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준용

□ 작성대상

-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서: 기획예산과 작성(기금 총괄)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개별 기금운용 부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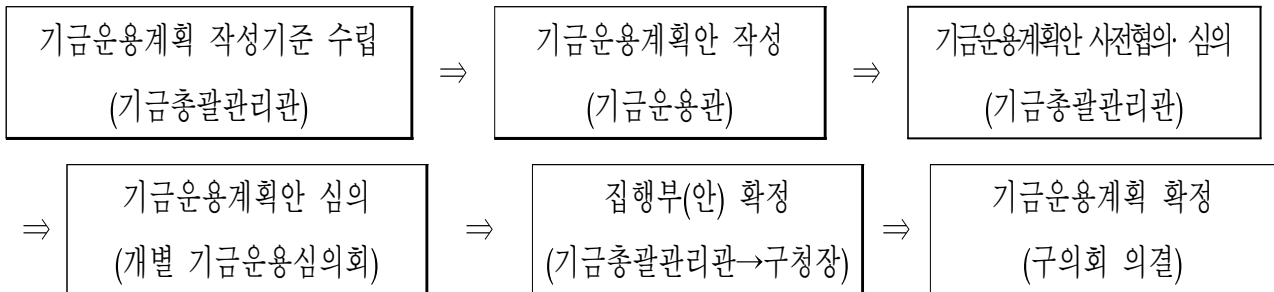
□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 운용총칙: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규정
-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세입예산과 같이 장 · 관 · 항 ·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지출계획: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로써 확정



2.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 운용총칙

- 기금 설치근거, 기금 설치목적,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등을 명시

□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 총괄

- 기금의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의 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의 과목으로 구성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등의 과목으로 구성

○ 수입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예치금, 예수금, 예탁금상환금이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지출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 지출계획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후 집행

※ 단,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주요항목 내 변경)

<예시> A정책사업 10억 + B정책사업 10억 + C정책사업 30억

1. 기금 총액 변경없이 A 8억, B 12억, C 30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2. 수입이 4억 증가하여 지출내역을
 - A 11억, B 11억, C 32억으로 조정: 의결 불요(3개 사업 모두 20% 이내 변경)
 - A 13억, B 11억, C 30억으로 조정: 의결 필요(A사업 20% 초과)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
 - 조성액: 기금결산서 조성 세부명세서의 당해연도 조성액
 - 집행액: 기금결산서 조성 세부명세서의 당해연도 사용액
- 2015·2016년도는 계획금액 기준으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구분 작성

□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 2014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서 기준 당해연도말 현재액 작성
- 2015·2016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작성

IV 행정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8. 29.限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제출 9. 10.限
-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10. 21.限
-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의회 제출 11. 21.限

붙임 1. 기금운용계획 제출서식 1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2.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월별 계획서 1부.
3. 2016년 지방자체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4. e-호조시스템 전산입력 매뉴얼 3부. 끝.